

## 6. 법인세와 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차이

### (1) 인건비

| 구분         |         | 법인    | 개인사업자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사업자 인건비    |         | 손금산입  | 필요경비 불산입* |
| 사업자 가족 인건비 | 사업에 종사  | 손금산입  | 필요경비 산입   |
|            | 위 외의 경우 | 손금불산입 | 필요경비 불산입  |

\* 단,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는 필요경비 산입(직장가입자 · 지역가입자 불문)  
→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(∵ 종합소득공제시 연금보험료공제로 차감함)

### (2) 수입이자 · 수입배당금

| 법인세   | 소득세  |
|---|--|
| 익금에 산입하되, 수입배당금이 제시되는 경우 이중과세조정으로 인한 익금불산입액 계산* | <1단계>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불산입(∵이자·배당소득에 해당)<br><2단계> 총수입금액불산입한 금액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 판단 |

\* 익금불산입액 : (수입배당금 - 지급이자 × 주식적수/자산적수) × 익금불산입률

### (3) 지급이자

| 구분    | 법인세            | 소득세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불산입순서 | 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| 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          |
|       | ② 비실명 채권·증권이자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③ 건설자금이자       | ② 건설자금이자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-              | ③ 초과인출금 이자* <sup>1</sup>  |
|       | ④ 업무무관자산 이자    | ④ 업무무관자산 이자* <sup>2</sup> |
| 적용이자율 | 평균이자율          |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 적용            |

\*<sup>1</sup> 초과인출금 이자

$$\text{필요경비불산입액} = \text{지급이자} \times \frac{\min(\text{초과인출금적수}, \text{차입금 적수})}{\text{차입금 적수}}$$

- 선순위에서 불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며, 여러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순차로 불산입함.
- 초과인출금 : 사업용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(-)인 경우 그 (-)금액

|       |    |
|-------|----|
| 자산    | 부채 |
| 초과인출금 |    |

\*<sup>2</sup> 업무무관자산 이자

차입금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이

- ① 분명한 경우 : 그 이자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
- ② 불분명한 경우

$$\text{필요경비불산입액} = \text{지급이자} \times \frac{\min(\text{업무무관자산적수}, \text{차입금 적수})}{\text{차입금 적수}}$$

- 선순위에서 불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며, 여러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순차로 불산입함.
-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(대표자)가 인출한 금액은 인출금으로 보며,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

(사례)

· 자료

| 이자율 | 이자비용  | 차입금 적수     | 초과인출금 적수  | 비고        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18% | 2,250 | 4,562,500  |           |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|
| 15% | 600   | 1,460,000  | 1,460,000 |            |
| 14% | 5,600 | 14,600,000 | 980,000   |            |
|     | 8,450 | 20,622,500 | 2,440,000 |            |

· 필요경비 불산입

<1>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: 2,250

<2> 초과인출금이자 : 600 + 375.890 = 975.890

(1순위) 15%분 : 600 × 1,460,000/1,460,000 = 600

(2순위) 14%분 : 5,600 × 980,000/14,600,000 = 375.890

#### (4) 고정자산 처분손익 및 시부인계산

| 단계                    | 법인세   | 소득세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<1> 처분손익 세무조정         | 처분이익: 익금 인정<br>처분손실: 손금 인정<br>(∵ 순자산증가설)    | 처분이익: 총수입금액불산입<br>처분손실: 필요경비불산입<br>(∵ 소득원천설에 따라 일시적 소득이므로 과세×)          |
| <2>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|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시부인계산 ×<br>(∵ 해봤자 처분즉시 추인) | · 시부인계산○(월할상각)<br>·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<br>1년의 상각범위액 × $\frac{\text{사용월수}}{12}$ |
| <3> 양도자산의 유보잔액 추인     | 손금산입(△유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가 세무조정 없이 장부에서 소멸시킴  |

(사례)

취득가액 10의 건물(유보잔액 20)을 2015.9.20.에 처분하고 처분손익 30을 계상, 감가상각비 6(1년간 상각범위액 10)

| 단계         | 법인세          | 소득세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<1> 처분손익   | 조정×          | 30 총수입금액불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2> 상각시부인  | 조정×          | 6 - 10 × 9/12 = △1.5<br>→ min(1.5, 20)을 필요경비산입(△) |
| <3> 유보잔액추인 | 20 손금산입(△유보) | 조정×   |

(특례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법인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득세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개체·기술<br>낙후로 생산설비<br>폐기 | ① 폐기시 | 결산서에 계상하면 1,000원<br>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인정 |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불산입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처분시 | 1,000원을 손금산입                       |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산입*<br>(특례) |
| 위의 경우로 유보잔액 추인            |       | 폐기시 손금산입(△유보)                      | 처분시 필요경비산입(△유보)       |

\* 소득세법에서는 고정자산처분손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, 시설개체·기술낙후로 폐기한 생산설비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손실을 필요경비 산입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

(비교) 기말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폐기 손실을 필요경비불산입

(5) 자산의 평가차익

| 구분             | 법인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득세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말 외화자산·부채의 평가 | 규정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규정 없음<br>(평가손익의 계상을 인정×) |
| 위 외의 자산의 평가차익  | ·원칙: 익금불산입<br>·예외: 법에 의한 고정자산<br>평가증은 익금 | ·원칙: 총수입금액불산입<br>·예외 없음  |

(6) 총당금·준비금

| 구분       | 내용   |     |     |
|----------|--|-----|-----|
| 퇴직급여총당금* | ·한도액 : min(①, ②)<br>① 총급여액 × 5%<br>② 퇴직금추계액 × 5% - 세법상 퇴·총 이월잔액 + 퇴직금전환금 |     |     |
|          | 대상   | 법인세 | 소득세 |
|          | 대표자  | 포함  | 제외  |
|          | 사업에 종사 안하는 가족  | 제외  | 제외  |
| 대손총당금    | 한도액: 설정대상 채권가액 × 설정률   |     |     |
|          | 구분   | 법인세 | 소득세 |
|          | 대여금  | 포함  | 제외  |
|          | 고정자산처분미수금  | 포함  | 제외  |
| 일시상각총당금  | · 설정대상 : 국고보조금과 보험차익(2가지만)<br>(비교) 법인세법: 공사부담금 등도 설정가능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         | · 설정방법: 결산조정만 인정<br>(비교) 법인세법: 신고조정도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
\* 퇴직급여총당금 및 퇴직연금총당금 한도 계산 상 퇴직급여추계액을 법인세법에서는 max(①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, ②보험수리적기준 등 퇴직급여추계액)으로 하고 있으나, 소득세법에서는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으로 계산함



\*<sup>1</sup>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므로 다음의 세무조정을 행함

- ①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
- ②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

\*<sup>2</sup> 출자금의 인출로 보므로 별도의 제재 없음. 단, 초과인출금 발생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조정을 행함

(10) 기부금

1) 법인세법과의 차이

| 구분             | 내용   |     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|-----|------------|
| 기부금의 범위        | 사업자 본인 기부금 +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부금   |     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현물기부금 평가       | · 지정기부금 평가방법<br>① 법인세법: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max(장부가액, 시가), 특수관계 없는자에 대한 지정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<br>② 소득세법: 기부 상대방과 무관하게 지정기부금을 max(장부가액, 시가)로 평가  |     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기부금의 구분        | · 소득세법에만 있는 규정<br>①특별재난지역의 복구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* <sup>1</sup> :법정기부금<br>②정치자금기부금* <sup>2</sup><br>③사회환원기부신탁에 신탁한 금액: 지정기부금<br>④노동조합비, 교원단체회비, 공무원직장협의회회비: 지정기부금  |     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한도적용률         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분</th> <th>법인세</th> <th>소득세</th> </tr> <tr> <td>정치자금</td> <td>손금불산입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>법정</td> <td>50%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>우리사주조합</td> <td>전액손금, 30%</td> <td>30%</td> </tr> <tr> <td>지정</td> <td>10%</td> <td>아래 2)에서 설명</td> </tr> </table> |            |  | 구분 | 법인세             | 소득세  | 정치자금    | 손금불산입 | 100% | 법정     | 50%     | 100% | 우리사주조합 | 전액손금, 30% | 30% | 지정 | 10% | 아래 2)에서 설명 |
| 구분             | 법인세  | 소득세 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정치자금           | 손금불산입  | 100%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법정             | 50%  | 100%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우리사주조합         | 전액손금, 30%  | 30% 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지정             | 10%  | 아래 2)에서 설명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분</th> <th>이월공제기간(소득세=법인세)</th> </tr> <tr> <td>정치자금</td> <td>이월공제 안됨</td> </tr> <tr> <td>법정</td> <td>5년</td> </tr> <tr> <td>우리사주조합</td> <td>이월공제 안됨</td> </tr> <tr> <td>지정</td> <td>5년</td> </tr> </table>   |            |  | 구분 | 이월공제기간(소득세=법인세) | 정치자금 | 이월공제 안됨 | 법정    | 5년   | 우리사주조합 | 이월공제 안됨 | 지정   | 5년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구분             | 이월공제기간(소득세=법인세)  |     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정치자금           | 이월공제 안됨  |     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법정             | 5년   |     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우리사주조합         | 이월공제 안됨  |     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| 지정             | 5년   |     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      |

\*<sup>1</sup> 용역의 가액: 봉사일수(=총봉사시간/8시간) × 5만원 + 부수 유류비용·재료비등 직접비용



\*<sup>2</sup> 정치자금기부금

| 구분 | 처리방법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인 | 비지정기부금 → 손금불산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인 | 10만원 이하분       | ‘ 기부금 × 100/110 ’ 정치자금세액공제로 공제 |
|    | 10만원 초과분       | 기준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     |

2) 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액

| 구분     | 한도액   |
|--------|---|
| 정치자금   | 기준소득금액* × 100%  |
| 법정     | 기준소득금액 × 100%   |
| 우리사주조합 | (기준소득금액 - 정치자금 · 법정 인정액) × 30%  |
| 지정     |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<br>(기준소득금액-정치자금·법정 인정액-우리사주조합 인정액)×10%<br>+min(㉠,㉡)<br>㉠ (기준소득금액-정치자금·법정 인정액-우리사주조합 인정액)×20%<br>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<br>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<br>(기준소득금액-정치자금·법정 인정액-우리사주조합 인정액)×30% |

\* 기준소득금액

기준소득금액= 차가감소득금액 + (정치자금 · 법정 + 우리사주조합 + 지정) - 이월결손금<sup>\*1</sup>

\*1 10년(2008.12.31. 이전 발생분은 5년)이내 발생분을 말함